

의안번호	2205754
의 퇴 인	김장겸 의원
회 답 일	2025. 1. 13.
추 계 번호	24B52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1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¹⁾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4항)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44조의12 (접속 차단 조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음(제1항) 1.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7.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재량규정
3	안 제62조 (국제협력)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함 3의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3의3.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의무규정

1) 안 제44조의11(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11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4조의12 (접속 차단 조치) 신설	
3	안 제62조(국제협력)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2. 상세 사유

□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등 실태 점검(안 제44조의11 신설)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받거나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접속 차단 조치(안 제44조의12 신설)

-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 등이 증가하여 심의를 위한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를 위한 심의부서 인력은 2024년 11월 기준 65명이고, 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10억 4,600만원임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을 위한 심의부서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위 반 유 형							총 계
	법질서 위반 정보	사회법익 침해 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음란·성매매 정보	
일반직	7	8	5	5	3	7	8	43
기능직	5	6	2	—	1	1	7	22
계	12	14	7	5	4	8	15	65

주: 2024.11.1. 통신심의 의안 상정 부서 현원 기준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관련 예산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소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통신모니터	합 계
101	46	899	1,046

주: 2024년 편성 예산 기준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각 건별 심의 횟수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안 제62조)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할 경우 상호 협력의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상호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24.11월)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1	Aceville	텐센트 코리아	21	Match group	제너럴에이전트
2	Adobe	한국어도비시스템즈	22	Meta Platforms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3	Agoda	법무법인 케이씨엘	23	Nike	제너럴에이전트
4	Airbnb	에어비앤비코리아	24	Oracle	한국오라클유한회사
5	Apple	애플코리아	25	PayPal	제너럴에이전트
6	Ali express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26	Roblox	제너럴에이전트
7	Booking.com	법무법인 태평양	27	Skyscanner	법무법인 태평양
8	Dailymotion	법무법인 광장	28	Shein	법무법인 태평양
9	Epic games	에픽게임즈코리아	29	Snap	제너럴에이전트
10	Expedia	법무법인 대륙아주	30	SONY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11	Google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31	Sony InteractiveEntertainment	(주)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12	Hilton	정병혁	32	Sony Music entertainment	소니코리아
13	Hotels combined	법무법인 케이씨엘	33	Supercell	제너럴에이전트
14	Hotels.com	법무법인 대륙아주	34	SPOTIFY AB	법무법인 대륙아주
15	Hyatt hotel	HYGCC KOREA	35	Tiktok	법무법인 태평양
16	Intel	법무법인 화우	36	Trip.com	씨트립코리아
17	LINE	법무법인 태평양	37	Temu	제너럴에이전트
18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38	Tripadvisor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9	Marriott International	법무법인 광장	39	Ubisoft	제너럴에이전트
20	Microsoft	제너럴에이전트	40	Zoom	제너럴에이전트

자료: 방송통신위원회